친환경축산팀

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축산	신유호	행)3921 일)220-39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 모돈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자돈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축종의 축사에 시설현대화지원을 통해 생산성향상 도모

구분	성 과 지 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한육우	▪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50.0	43.0	46.9	49.1	매년 1월중	- '10.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양돈	▪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MSY, 두/년)	15.5	13.4	14	14.8	매년 1월중	-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양계	▪ 일당증체량(육계)	39.8	39.3	39.5	39.5	매년 1월중	-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 연간회전율	5.8	5.6	5.7	5.7	매년 1월중	-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260	8,350	8,350	매년 6월경	- 축산물 생산비(농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10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신유호	행)3921 일)220-39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 감축

○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자원화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12년 9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07	'08	'09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가축분뇨자원화율	86	83	84	85	2011.2	전체 가축분뇨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4. 지원조건

구 분	지원한도액 (백만원)	지원율(%)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지원대상
○ 개별시설(공동)	400(2,000)	30	50	20	-	개별농가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3,000	50	20	30		농업법인 등
- 에너지화	7,000	30	20	30	20	
○ 정착촌구조개선	개별기준	70	-	30	-	한센정착촌
○ 액비유통센터	200	40	-	40	20	농업법인 등
○ 액비저장조	17(200톤기준)	30	-	50	20	축산·경종농가 등
○ 액비살포비	ha당 200천원	50		50		액비유통센터 등
○ 액비성분분석기	24	50		50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운영조직체

※ 융자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농어업인 3%, 농어업인외 관련업체 등 4%

5. 2010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5,909,630	2,623,700	274,200	1,682,830	1,132,500	196,400
◦ 개별·공동시설	33	1,065,000	319,500		213,000	532,500	
◦ 공동자원화시설	1	3,000,000	1,500,000	180,000	720,000	600,000	
◦ 정착촌구조개선	10	291,430	204,000		87,430		
◦ 액비저장조	46	782,000	234,600	78,200	312,800		156,400
◦ 액비유통센타	1	200,000	80,000	16,000	64,000		40,000
◦ 액비성분분석기	5	120,000	60,000		60,000		
◦ 액비살포비	2,256ha	451,200	225,600		225,600		

※ 시군별 사업내역 : 별첨

6. 행정사항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2010. 1.20일한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상하반기) : '10. 6.30, 12.30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 2011. 1.31일한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 '10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시군별 사업비 내역

□ 개별·공동시설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시군비	융 자	
계	33	1,065,000	319,500	213,000	532,500	
청주시	-	-	-	-	-	
충주시	7	202,350	60,705	40,470	101,175	
제천시	5	85,200	25,560	17,040	42,600	
청원군	6	213,000	63,900	42,600	106,500	
보은군	4	106,500	31,950	21,300	53,250	
옥천군	2	53,250	15,975	10,650	26,625	
영동군	2	85,200	25,560	17,040	42,600	
증평군	1	21,300	6,390	4,260	10,650	
진천군	2	95,850	28,755	19,170	47,925	
괴산군	2	95,850	28,755	19,170	47,925	
음성군	2	106,500	31,950	21,300	53,250	
단양군	-	-	-	-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계	1	3,000,000	1,500,000	180,000	720,000	600,000	
청주시	-	-	-	-	-	-	
충주시	-	-	-	-	-	-	
제천시	1	3,000,000	1,500,000	180,000	720,000	600,000	
청원군	-	-	-	-	-	-	
보은군	-	-	-	-	-	-	
옥천군	-	-	-	-	-	-	
영동군	-	-	-	-	-	-	
증평군	-	-	-	-	-	-	
진천군	-	-	-	-	-	-	
괴산군	-	-	-	-	-	-	
음성군	-	-	-	-	-	-	
단양군	-	-	-	-	-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정착촌구조개선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 자	
계	10	291,430	204,000	0	87,430		
청주시	-	-	-	-	-	-	
충주시	-	-	-	-	-	-	
제천시	-	-	-	-	-	-	
청원군	10	291,430	204,000	-	87,430	-	
보은군	-	-	-	-	-	-	
옥천군	-	-	-	-	-	-	
영동군	-	-	-	-	-	-	
증평군	-	-	-	-	-	-	
진천군	-	-	-	-	-	-	
괴산군	-	-	-	-	-	-	
음성군	-	-	-	-	-	-	
단양군	-	-	-	-	-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액비저장조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46	782,000	234,600	78,200	312,800	156,400	
청주시	-	-	-	-	-	-	
충주시	11	187,000	56,100	18,700	74,800	37,400	
제천시	1	17,000	5,100	1,700	6,800	3,400	
청원군	11	187,000	56,100	18,700	74,800	37,400	
보은군	2	34,000	10,200	3,400	13,600	6,800	
옥천군	2	34,000	10,200	3,400	13,600	6,800	
영동군	3	51,000	15,300	5,100	20,400	10,200	
증평군	3	51,000	15,300	5,100	20,400	10,200	
진천군	10	170,000	51,000	17,000	68,000	34,000	
괴산군	2	34,000	10,200	3,400	13,600	6,800	
음성군	1	17,000	5,100	1,700	6,800	3,400	
단양군	-	-	-	-	-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액비유통센터

(단위 : ha, 천원)

구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	200,000	80,000	16,000	64,000	40,000	
청주시	-	-	-	-	-	-	
충주시	-	-	-	-	-	-	
제천시	-	-	-	-	-	-	
청원군	-	-	-	-	-	-	
보은군	-	-	-	-	-	-	
옥천군	-	-	-	-	-	-	
영동군	-	-	-	-	-	-	
증평군	-	-	-	-	-	-	
진천군	-	-	-	-	-	-	
괴산군	1	200,000	80,000	16,000	64,000	40,000	
음성군	-	-	-	-	-	-	
단양군	-	-	-	-	-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액비 성분 분석기

(단위 : ha, 천원)

구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5	120,000	60,000	-	60,000	-	
청주시	-	-	-	-	-	-	
충주시	-	-	-	-	-	-	
제천시	-	-	-	-	-	-	
청원군	2	48,000	24,000	-	24,000	-	
보은군	-	-	-	-	-	-	
옥천군	1	24,000	12,000	-	12,000	-	
영동군	1	24,000	12,000	-	12,000	-	
증평군	1	24,000	12,000	-	12,000	-	
진천군	-	-	-	-	-	-	
괴산군	-	-	-	-	-	-	
음성군	-	-	-	-	-	-	
단양군	-	-	-	-	-	-	

시군별 사업비 내역

□ 액비살포비

(단위 : ha, 천원)

구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256	451,200	225,600	-	225,600	-	
청주시	-	-	-	-	-	-	
충주시	444	88,800	44,400	-	44,400	-	
제천시	124	24,800	12,400	-	12,400	-	
청원군	888	177,600	88,800	-	88,800	-	
보은군	89	17,800	8,900	-	8,900	-	
옥천군	133	26,600	13,300	-	13,300	-	
영동군	-	-	-	-	-	-	
증평군	-	-	-	-	-	-	
진천군	267	53,400	26,700	-	26,700	-	
괴산군	178	35,600	17,800	-	17,800	-	
음성군	133	26,600	13,300	-	13,300	-	
단양군	-	-	-	-	-	-	

액비살포비지원사업 세부지침

□ 목 적

○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 경종·축산, 전문유통업체 등이 참여한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시장·군수가 전문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민간·생산자단체, 축분비료 유통센터, 부산물비료생산업체,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 등 포함)

○ 전문유통주체가 유통협의체 관내·외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액비를 살포(경운 포함)한 경우 살포비 지원

○ 참여하고자 하는 유통주체는 최소 처리능력이 10천톤/년 이상

- 시장·군수는 참여농가 및 지역여건에 따라 참여규모 조정 가능

○ 가축분뇨의 품질안전성을 위하여 살포시 시비처방서 발급 활성화

○ 사 업 량

사 업 명	물 량	단 가	사 업 비 (천원)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액비살포비지원	2,256 ha	200천원/ha	451,200	225,600	225,600

□ 사업추진 체계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기본계획 하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장·군수

*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유통주체 선정, 액비살포비 지원·관리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요건을 갖추고 유통주체 지정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를 신청한 유통주체중 액비 살포 능력, 살포 면적 확보, 농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유통주체를 선정(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 유통주체의 살포물량 및 처리능력 등에 따라 복수선정 가능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액비살포시 농작물 생산성에 대한 상호간 협약이 명확한 경우

○ 전문유통주체의 전문성 및 지속성이 확보된 경우

- 참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대한 지도, 시설관리능력이 있고 추가적인 수요처 확보 능력이 있으며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내 경종·축산농가가 보유한 액비저장조를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 경우

○ 시장·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의 살포능력, 살포면적, 참여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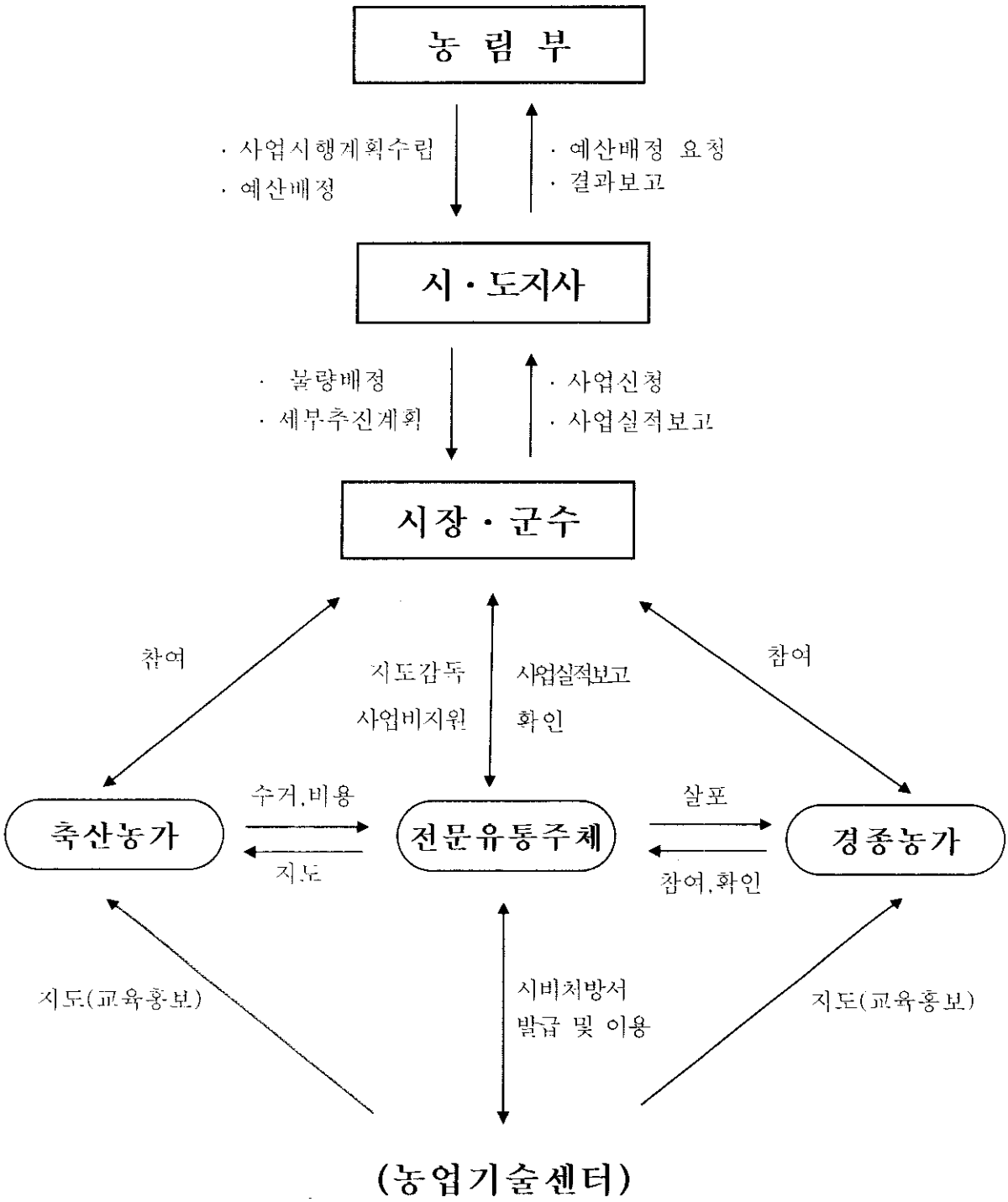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지역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 사업시행 유통주체 선정결과 및 살포능력 등

○ 지역 유통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사업시행체계



<유통협의체>

□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 추진 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대규모 액비 소요시책과 연계방안 강구
-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 경종농가

-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결정, 유통주체의 살포 내용확인 및 지도,
- 액비살포시 일부 냄새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액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유통주체에 위탁

○ 전문유통주체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종농가 액비 및 저장조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부여
- 경종농가 추가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 사업시행요령

○ 시장·군수는 기술지도기관을 통하여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 관련 교육 및 홍보실시

○ 청보리,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는 가급적 액비살포 유도

○ 유통주체는 액비살포시 시장·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축산농가의 액비성상, 살포대상지의 토양, 대상작물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시비처방서 발급 요청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가 액비살포 신고를 할 경우 수시로 액비살포현장을 점검

○ 유통주체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된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하되 살포량에 대해서는 경종농가의 희망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 유통주체가 액비를 살포할 경우 경종농가입회하에 살포를 하고 <붙임 3> 양식에 의거 경종농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하고 시장·군수에게 살포비 지원을 신청 <붙임 4>할 경우 시비처방서, 경종농가 살포확인서를 함께 제출

○ 시장·군수는 살포전 신고내용, 시비처방서, 확인서를 확인하여 살포비 지원

○ 전문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 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붙임 1>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영업소재지			
⑥인력 및 장비	○ 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5톤기준) 대 ○ 트 랙 터 : 대 ○ 액비살포탱크(5톤기준) 대 ○ 로 터 리 : 대 ○ 경운장비 : 대 ○ 기타장비 :		
⑦ 농경지확보 면적(ha)	○ 기 확 보 : ○ 확보예정 :		
⑧ 액비확보(톤)	톤/일 (축산농가수 호)		
⑨ 관리저장조	축산농가 소유 ○○기, 경종농가 소유 ○○기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 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종 농가 관리계획 1부

유의사항	1. 초지 및 농경지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농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소유자(임차인)의 날인이 있어야 함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

<붙임 2>

○○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1조(목적) ○○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 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 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활) 시장·군수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지원, 경종농가 연계 등

② 시비처방서 발급, 경종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총체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종농가의 역할) 경종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저장조 운영을 유통센터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비처방서 및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②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③ 액비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④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⑤ 경종농가 저장조 관리 및 시비처방서 관리

⑥ 경종농가 추가확보 및 수요처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종,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농가대표 (인)

경종농가대표 (인)

전문유통주체 (인)

○○ 시장군수 (인)

<붙임 3>

액 비 살 포 확 인 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농 가 명 : (☎ :)

□ 살 포 일 시 : 2010년 월 일

□ 살 포 장 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 배 작 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1) 시장·군수 입회, 2) 농가 입회, 3) 미 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농 가 명 : (서명)

<붙임 4>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 청 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 가 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 가 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 물 별 살포면적		
	작 물 별 살 포 량		
구비서류 1. 시비처방서 각 1부. 2. 농가 확인서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3.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신유호	행)3921 일)220-3921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알선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퇴·액비 시범포 운영과 캠페인, 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및 조기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농협중앙회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내용

- 지원규모 : 2,000백만원 내외(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대상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

- 자금용도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급금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퇴·액비 이용확대 도모를 위하여 임차한 농지 임대료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 및 교육·홍보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의 개보수 자금

□ 세부추진요령 : 별도시달

4.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신유호	행)3921 일)220-39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퇴·액비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수거·처리 기계화 장비 지원으로 퇴비 생산·이용의 효율성 증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스키드로다 보급 (대)	30	-	30	30	매년 1월중	가축사육 농가중 전업농 비율로 산출

4. 2010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가축분뇨처리용 스키드로다	30대	600,000	90,000	210,000	300,0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희망하는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이용 활성화를 위한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다 보급

○ 사업량 및 사업비 : 30대/600백만원(시군별 내역 : 별첨)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2. 사업시행요령

가. 신청자격

○ 가축분뇨처리전용 스키드로다를 이용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 전업규모 :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오리 3만수 이상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나. 추진요령

○ 가축분뇨처리 전용 스키드로다는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구입 할 수 있도록 조기 구입지도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농기계의 사후관리(A/S)를 할 수 있는 기종선정 의무화

○ 작업내용 등 기계·장비 활용 및 운영관리 실적 기록

다.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고 가축분뇨처리전용 스키드로다 구입 확인 후 자금집행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집행여부 확인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3.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스키드로다의 사후관리 실시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가축분뇨처리장비 사후관리기간 적용

※ 스키드로다를 취득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금지

⇒ 위반시 회수하여 타인에게 전환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2> : 2010. 1. 2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10. 12. 31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30 대**	**600,000**	**90,000**	**210,000**	**300,000**	
청주시	1	22,000	3,000	7,000	10,000	
충주시	3	60,000	9,000	21,000	30,000	
제천시	3	60,000	9,000	21,000	30,000	
청원군	5	100,000	15,000	35,000	50,000	
보은군	3	60,000	9,000	21,000	30,000	
옥천군	2	40,000	6,000	14,000	20,000	
영동군	2	40,000	6,000	14,000	20,000	
증평군	1	20,000	3,000	7,000	10,000	
진천군	3	60,000	9,000	21,000	30,000	
괴산군	3	60,000	9,000	21,000	30,000	
음성군	3	60,000	9,000	21,000	30,000	
단양군	1	20,000	3,000	7,000	10,000	

서식 1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보급사업 신청계획서

□ 사업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축산규모

- 가축 사육두수　　:　　두(축종별　　)
- 자연순환농업재배 :　　ha(작목별　　)
- 농지 이용계획　　:　　ha(자가　　임대　　)

□ 장비보유현황

구 분	트랙터	○○	○○	○○	○○	○○	○○	기 타
대 수	마력대							

□ 스키드로다 구입계획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구 입 가 격 (천원)				구 입 예정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자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 스키드로다 구입계획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구 입 가 격 (천원)				구입예정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3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다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현황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장소재지 :

구입기종	사업량	규격	제조번호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5. 퇴·액비 시범포 운영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신유호	행)3921 일)220-3921

○ 가축분뇨 퇴·액비사용에 의한 화학비료 감축, 작물 생산성향상 및 경제적 우수성을 경종농가에 홍보

○ 퇴·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전환으로 퇴·액비 이용확대 도모 및 자연순환농업 조기정착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0. 1 ~ 12

○ 사업내용

- 사 업 비 : 2,000천원/개소당
- 사업시행자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액비유통센타, 공동자원화시설, 경종·축산농가
- 자금용도 : 퇴·액비시범포 운용 및 연찬회 개최시 사업비지원

□ 추진방침

○ 축산 및 경종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 추진

○ 지역별 대표적인 품목위주의 시범포 운영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 농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품목 선정

○ 시범농가 사전교육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회 실시로 자연순환농업 조기정착 유도

○ 시범사업 결과 사업시행자는 퇴·액비 시범포 연찬회 개최

- 연찬회를 개최해야 시범포 운영비 및 연찬회비 예산 일부지원
- 예산 신청시 연찬회 개최실적 내역(사진자료 등) 첨부

□ 세부추진요령 : 별도시달

'10년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 지침

❑ 목 적

○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에 의한 화학비료 감축, 작물생산성 향상 및 경제적 우수성을 경종농가에 소개하여 퇴·액비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로 자연순환농업 조기 정착

❑ 추진방향

○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여 자연순환 농법으로 재배한 후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수요자인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참여 유도

❑ 지원계획

○ 사업량('10) : 퇴·액비시범포 32개소(전국)

○ 사 업 비 : 개소당/2,000천원 이내

- 시범포운영 및 연찬회까지 개최시 사업비지원

※ 전체사업비 중 시범포운영비와 연찬회 개최비용이 6:4수준 집행

❑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자

- 시범포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경종농가, 축산농가 등

○ 시범포 선정

- 사업대상자가 시범포를 자체 확보·운영하거나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포 확보
- 액비저장조 인근농지 또는 접근성이 좋은 평야지대의 농지에 시범포 설치

○ 작물선정 및 시범포면적 (0.3ha이상)

- 지역특성에 맞고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6,000ha이상인 작물을 대상으로 선정

· 식량작물, 두류, 잡곡, 서류,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양채류, 과수, 사료작물 등

- 작물별 면적 : 벼(1ha이상), 콩, 고추, 배추, 무, 마늘(0.5ha이상), 기타(0.3ha이상)

※ 하우스 작물 일 경우 기준면적 예외

○ 대조구 설치 및 운영(※ 시범포 재배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설치)

- 시범포와 동일 면적의 대조구를 인접농지에 별도 확보
- 시범포와 동일 품종의 작물을 관행농법으로 재배

<시범포 운영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 · 군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선정, 사업신청의 타당성검토 및 계획조정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사업계획 변경승인, 자금집행, 사업시행과 지도·감독,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 등 본 사업추진상 제반업무 수행

○ 작물별 퇴 · 액비 사용사례를 다양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여 운영

○ 사업종료 후 시범포별 연찬회를 개최하고 1개월 이내에 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작물생육과정 및 연찬회개최 등 사진첨부)

<기관별 역할>

○ 사업대상자

- 시범포 선정 및 자체 시범포운영 세부추진 계획 수립
-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시범포운영, 자료조사, 시료채취·분석 경제성평가, 작물생육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점검

- 양질의 퇴·액비(충분한 부숙, 악취제거)를 확보하여 시범포에 살포
- 시범포 운영이 끝난 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찬회개최 주관
-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시범포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양식 : 별첨)

※ 추진체계 : 시범포선정→시범포운영·관리→사업종료후 시범포 연찬회개최→시범포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농업기술원
- 사업대상자에게 시범포 운영요령 지도
- 각 시범포의 작물재배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퇴·액비 처방기준 보완 등에 활용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결정, 사업비 검정·정산,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현황 지도·감독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퇴·액비 처방서 발급 및 살포, 시범포 운영지도
- 농작물 비배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지도
- 시범포 운영자료조사, 시료채취·분석, 경제성 평가 등 기술지원

❑ 시범포운영 결과 평가

○ 전국단위 시범포 운영결과 평가회 개최('10. 9월)
- 퇴·액비전문가, 작물생육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각 시범포 운영결과 보고서를 서류평가, 그 중 우수 시범포는 프리젠테이션 실시

○ 평가항목 : 퇴·액비 시범포운영 및 홍보실적 등을 대상으로 평가

○ 우수 시범포 운영사업 대상자에 상장(장관상 등) 및 상금수여

○ 퇴·액비 시범포 운영사업 대상자에게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 유통센터 운영실태 평가,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시 우대

6. 축사 대형환기휀 시설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으로 오염되거나 불량해진 축사 내부환경을 환기휀 시설로 개선하여

○ 가축에 쾌적한 사육공간을 제공하고 폐사 및 생산성 저하 방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축종의 축사에 대형 환기휀 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도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07	'08	'09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대형환기휀 보급 농가수	300	400호	749호	625호	매년 3월중	'10.1~12월까지 대형환기휀 보급농가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합 계	1,600	1,600	1,200	1,200	1,200
도 비	240	240	180	180	180
시군비	560	560	420	420	420
자부담	800	800	600	600	6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한·육우 : 사육규모 30두 이상인 농가
- 젖　　소 : 사육규모 30두 이상인 농가
- 돼　　지 : 사육규모 500두 이상인 농가
- 　닭　　: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오　　리 :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환기휀, 에어쿨, 송풍기, 입배기관 및 컨트롤러(무창계사) 구입 설치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구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비 한도액 : 호당 4,000천원(도비 600, 시군비 1,400, 자담 2,000)
단, 무창계사 입배기관 및 컨트롤러는 호당6,000천원 한도

- 지원단비 한도액 내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택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300개소	1,200,000 (100%)	180,000 (15%)	420,000 (35%)	600,000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보고

○ 농가

- 사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완료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자금집행과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9.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가 최고 지원한도액보다 미달되게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자체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 추가선정 등 조치

○ 시군의 자체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시행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에 보고

○ 시장, 군수는 지원장비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09 지원사업 사후관리실태조사 보고('10. 6월말 까지)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 → 시군	1. 20	서식 1호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1. 30	서식 2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 매분기 익월10일한 ·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사후관리실태조사 보고	시군 → 도	· 익년도 매년 6월말	서식 4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배정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300**	**1,200,000**	**180,000**	**420,000**	**600,000**	
청주	5	20,000	3,000	7,000	10,000	
충주	20	80,000	12,000	28,000	40,000	
제천	19	76,000	11,400	26,600	38,000	
청원	72	288,000	43,200	100,800	144,000	
보은	33	132,000	19,800	46,200	66,000	
옥천	20	80,000	12,000	28,000	40,000	
영동	14	56,000	8,400	19,600	28,000	
증평	10	40,000	6,000	14,000	20,000	
진천	30	120,000	18,000	42,000	60,000	
괴산	30	120,000	18,000	42,000	60,000	
음성	40	160,000	24,000	56,000	80,000	
단양	7	28,000	4,200	9,800	14,000	

서식 1

축사 대형환기휀 시설사업 참여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현황

합계(두,수)	한육우・젖소			기타축종 (돼지,닭,오리)
	성　우	육성우	송아지	

□ 신청량

신 청 장 비			
환기휀	에어쿨	송풍기	입배기관 및 컨트롤러(무창계사)
대	대	대	대

상기와 같이 축사 대형환기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신청장비(대)				축종	두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환기휀	에어쿨	송풍휀						
계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기종	호수	대수	계	도비	시비	자담
계획	환기휀						
	에어쿨						
	송풍기						
	기 타						
실적	환기휀						
	에어쿨						
	송풍기						
	기 타						
비율	환기휀						
	에어쿨						
	송풍기						
	기 타						

서식 4

장비활용실태 조사 보고

지원년도	대 상 자		사육두수	실태조사결과			비 고
	주 소	성명		계	정상활용	미활용	

7.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피해 대책으로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 고급화,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사육농가에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시설·장비 보급 농가수	200	-	419호	340호	매년 3월중	'10.1~12월까지 시설·장비 보급농가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1,000	800	800	1,600
도 비	-	150	120	120	240
시군비		350	280	280	560
자부담	-	500	400	400	8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한·육우 : 사육규모 30두 이상인 농가
- 젖　　소 : 사육규모 30두 이상인 농가
- 돼　　지 : 사육규모 500두 이상인 농가
- 　닭　　: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오　　리 :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 사　　슴 : 등록된 사슴영농조합법인 또는 사슴 사육농가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내용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시설·장비 품목중 지원한도액 내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
- 제품 선정은 품질보증(인증) 또는 A/S가 용이한 제품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품목 : 1농가당 1품목 지원하며 품목은 조견표 내에서 자율 선택단, 호당 지원수량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시군 자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음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200개소	800,000 (100%)	120,000 (15%)	280,000 (35%)	400,000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보고

○ 농가
- 사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완료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신청

9.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가 최고 지원한도액보다 미달되게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자체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대상자 추가선정 등 조치

○ 사업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에 보고

○ 시장, 군수는 지원장비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 → 시군	1. 20	서식 1호
대상자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1. 30	서식 2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 도	· 매분기 익월10일한 · 사업종료후 20일이내	서식 3호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건표

축종	시설·장비	호 당 지원수량	지원단가 (천원)	지원한도액 (천원)
소 (한육우, 젖소)	송아지방	4대	500	2,000
	스탄존(개체보정자동목걸이)	10조(4두정도/조)	200	2,000
	냉각기(2톤, 젖소)	1대	10,000	10,000
	자동브러시	1조(7대)	360	2,520
돼지	이유자돈 격리시설	1대	15,000	15,000
	악취저감장치(소취관)	1대(비육1,000두당)	13,000	13,000
	냉방시설(지하수이용)	1식	4,000	4,000
닭,오리	양계 니플급수기	1농장 기준	6,000	6,000
	왕겨살포기	1대	5,000	5,000
	왕겨수송차량	1대 (양계, 오리협회에 한함)	70,000	70,000
사슴	잔가지 파쇄기	1대	1,300	1,300
	녹용저온저장고	1개소 (영농조합등록법인에 한함)	6,000	6,000
공통 사항	자가발전기	1대	7,000	7,000
	열풍기(온풍기)	8대	500	4,000
	축사냉온수 자동분무시설	1농장 기준	10,000	10,000
	수질개선기	1대	2,000	2,000
	고압소독세척기	1대	3,000	3,000
	폐사축처리기	1대	20,000	20,000
	출입문소독시설	1대	3,500	3,500
	예방백신 보관 냉장고	1대	300	300
	사료빈 환풍기(온도조절)	4개	250	1,000
	해충 포충기(모기퇴치)	10기(300㎡당1대)	120	1,200
	미네랄 블록 고정대	10개	50	500
	AI방역용 야생조류 차단망 지원	1조	5,000	5,000
	출하용 계근대 (지상·지중식)	1기	20,000	20,000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장비 지원	1대	8,500	8,500
	개체관찰 CCTV (회전,줌,야간기능)	1조	3,000	3,000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호, 천원)

구분	배정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200**	**800,000**	**120,000**	**280,000**	**400,000**	
청주	3	12,000	1,800	4,200	6,000	
충주	26	104,000	15,600	36,400	52,000	
제천	12	48,000	7,200	16,800	24,000	
청원	47	188,000	28,200	65,800	94,000	
보은	22	88,000	13,200	30,800	44,000	
옥천	12	48,000	7,200	16,800	24,000	
영동	9	36,000	5,400	12,600	18,000	
증평	6	24,000	3,600	8,400	12,000	
진천	18	72,000	10,800	25,200	36,000	
괴산	18	72,000	10,800	25,200	36,000	
음성	23	92,000	13,800	32,200	46,000	
단양	4	16,000	2,400	5,600	8,000	

서식 1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참여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집)　　(핸드폰)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축종	사육 현황(두,수)				시설 현황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동	㎡

□ 신청내역

품 목	신청량	단 가	소요사업비
		천원	천원

상기와 같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사육 현황		신청 현황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품목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품목	호수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획							
실적							
비율							

※ 품목별 구분 작성

8. 육우 거세시술료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육우 거세·비육 촉진을 통한 육질 등급 향상으로 육우브랜드 활성화 유도

○ 수입쇠고기와의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거세 소요경비 지원으로 고급육생산 참여의욕 고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육질 2등급 이상 출현율(%)	51.0	43.9	44.3	50.0	2011.3	'10.1~12월까지 충북지역 거세육우 출하두수중 2등급 이상 출현율 (축산물등급판정소)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340	240	240	240	240
도 비	102	72	72	72	72
시군비	238	168	168	168	168
자부담	-	-	-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육우(젖소 수송아지)를 거세·비육하는 농가

○ 고급육 프로그램에 의거 16개월 이상 비육이 가능한 농가

○ 300두 이내 거세농가 우선 지원

○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

○ 대상자선정 : (별표2) "육우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 1~12월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거세시술료(6개월령 이내의 유혈거세만 인정) 지원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100%(도비 30%, 시군비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비 한도액 : 20천원/마리, 호당 350두 이내

○ 호당 지원한도액 : 7,000천원 한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12,000두	240,000 (100%)	72,000 (30%)	168,000 (70%)

8. 세부 추진요령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 →
거세실시(공무원입회)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서식 2호) → 도
  · 신청자격 : 고급육프로그램에 의거 16개월이상 비육이 가능한 농가
- 시군에서는 도 배정량 범위 내에서 농가별 적정 배정
- 사업추진 지도 점검
  · 거세시 현장확인 입회 및 확인서 서명 날인 실시(유혈거세만 인정)
  · 거세우 비육 사양관리 지도
-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지급·정산(서식 4호)

○ 농 가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서식 1호)
- 거세확인서 작성(공무원 입회)제출 → 시·군(서식 3호)
- 사업비(보조금 신청) → 거세 확인서 첨부

○ 거세사업 참여농가는 시군과 전화 협의하여 거세 세부일정을 수립후 거세 신청
- 거세는 원칙적으로 농가 책임하에 실시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시군,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으로 하여금 거세시 현장입회 확인하고 거세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계획 시달) 이전에 거세를 실시한 경우 시군에서 '10년 사업대상자로 적격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급

○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농가가 제출한 관련서류(거세확인서 등) 실적 확인 후 보조금을 입금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부정지급 사례 방지)
- 시장·군수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9.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거세우 사후관리 지도 점검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사업실시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대상자 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2. 28	서식 2호
육우거세 확인서	농가 → 시·군	·즉 시 (거세후 당일발행)	서식 3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도	·매분기익월 10일한 ·사업 종료후 20일이내	서식 4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 분	배정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12,000	240,000	72,000	168,000	
청주시	60	1,200	360	840	
충주시	190	3,800	1,140	2,660	
제천시	-	0	-	-	
청원군	8,470	169,400	50,820	118,580	
보은군	330	6,600	1,980	4,620	
옥천군	120	2,400	720	1,680	
영동군	310	6,200	1,860	4,340	
증평군	340	6,800	2,040	4,760	
진천군	710	14,200	4,260	9,940	
괴산군	130	2,600	780	1,820	
음성군	1,340	26,800	8,040	18,760	
단양군	-	0	-	-	

서식 1

육우거세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목 장 명 :

○ 목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자택)　　핸드폰)

□ 사업계획

거세 신청 두수	축산업 등록여부	사 육 두 수				'08연간계획			출하처
		계	육우 (젖소수소)	한우	교잡우	계	육우 (젖소수소)	기타 육우	

□ 판매처 확보방법 및 판매계획

○

상기와 같이 육우거세 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육우거세사업 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선 정 결 과		
주 소	성명	사육 두수	거세 두수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서식 3

육우거세 확인서

1. 농가개요

○ 주　　소 :

○ 성　　명 :

○ 목 장 명 :

○ 전화번호 : 집)　　휴대폰)

2. 거세내역

○ 거세일자 :　　.　　.　~　　.　　.(　　일)

○ 거세두수 :　　두(젖소수소)

○ 거세방법 :　　두(유혈 :　　두)

※ 거세 개체별 내역 : 별지작성

3. 보조금 신청

거세두수	보조금신청액	계 좌 번 호	비 고

상기와 같이 거세를 하였기 확인합니다.

2010.　　.　　.

농가명 :　　(인)

시군담당공무원 :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 획				
실 적				
비 율				

유혈거세 두수 내역

연번	개 체 번 호	개월령	비고
	기존이표활용 또는 우방번호 등 기재		

9. 송아지생산안정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이상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07	'08	'09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가입율(%) (주지표)	90%	104.5	105.4	104.6	'10.12.	(계약암소수/연초 가임암소수) × 100(%) * 가임암소수는 '09 가축통계(행정통계) 자료 이용
▪ 가입두수(천두) (부지표)	974	894	1,016	1,059	'10.12.	'10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기간(전년도 12월~당해연도 5월) 종료 후 가입두수 확인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148	596	1,072	300	300
도 비	287	149	161	45	45
시군비	287	149	375	105	105
자부담	574	298	536	150	15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계약대상우 : 한우 암소

○ 참여기간 : 2010. 1 ~ 2010. 12(1년간)

○ 청약신청기간 : 2009. 12. 1 ~ 2010. 5. 31(6개월)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안정제 가입부담금(두당) : 계약자 10천원, 지자체 10천원

- 전년도 가입암소는 재계약시 부담금 면제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30만원/두)에서 지원

7. 사업량 및 사업비

○ 15,000두, 30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담 150)

8. 세부 추진요령 : 2010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9.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사업계획 공고 및 농가 홍보실시

- 계약기간이 5월말까지이므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 강화

○ 청약기간 만료후 계약체결 결과를 축협으로부터 제출받아 도 보고

○ 농가계약이 끝난후 2개월내에 계약암소의 허위계약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부담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운영상황 보고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5,000	300,000	45,000	105,000	150,000	
청주시	250	5,000	750	1,750	2,500	
충주시	2,200	44,000	6,600	15,400	22,000	
제천시	1,170	23,400	3,510	8,190	11,700	
청원군	3,030	60,600	9,090	21,210	30,300	
보은군	2,020	40,400	6,060	14,140	20,200	
옥천군	1,450	29,000	4,350	10,150	14,500	
영동군	780	15,600	2,340	5,460	7,800	
증평군	470	9,400	1,410	3,290	4,700	
진천군	740	14,800	2,220	5,180	7,400	
괴산군	1,280	25,600	3,840	8,960	12,800	
음성군	1,220	24,400	3,660	8,540	12,200	
단양군	390	7,800	1,170	2,730	3,900	

10. 가축계열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

- '08년 현재 양돈 20%, 양계 74%인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05~'08년 참여율 증감을 감안하여 '16년까지 양돈 36%, 양계83%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07	'08	'09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가축계열화율					'11.2	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 총 도축두수×100
- 양돈	22	18	20			
- 양계	80	73	74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13,081	77,606	6,130	3,000	3,000
융 자	5,855	6,540	2,953	2,000	2,000
자부담	7,226	71,066	3,177	1,000	1,000

5. 사업시행요령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6. 행정사항 : '10. 1. 20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 → 도)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주체사육시설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열농가생산시설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료예정일	총투자계획			'10년 계획			'10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계열주체사육시설 (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0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 협의체 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별표3>

(양돈,양계,오리)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지정 연도		
대표자				전화 팩스		
주 소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시사육	GGP모돈(원종계)	F1모돈(종계)	비육돈(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돈·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자체공급율 (A/B)	
	두(천수)				%	
생 산 (연간)	구 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수(호)						
	두수(두)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 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자체공급율 (F/G)		
	톤				%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두(천수)		* 생산두수(E)와 같아야 함	%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체시설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10년	호	두/년	%	%	%	%
	2011년						
	2012년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11.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 정보지 보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신창균	행)3921 일)220-39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의 정보제공과 신기술 습득 및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축산전문지 공급으로 전문화된 정예 축산인 육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우선순위

○ 지원대상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친환경축산농가
- 도지사품질인증 및 한우광역브랜드참여농가

※ 친환경축산 신기술정보지는 축산농가의 의견수렴 선택 구독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1~12월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축산정보지 구독료 지원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100%(도비 20%, 시군비 8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500 부	36,000	7,200	28,800	

※ 사업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7. 추진요령

○ 사업지침시달 및 사업비 배정 (도 → 시군)

○ 친환경축산전문지 공급대상자 선정 및 전문지 확정 (시군)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

8. 행정사항

○ 친환경축산전문지 공급대상자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 및 정산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부)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500	36,000	7,200	28,800
청 주 시	7	504	101	403
충 주 시	65	4,680	936	3,744
제 천 시	30	2,160	432	1,728
청 원 군	117	8,424	1,685	6,739
보 은 군	54	3,888	778	3,110
옥 천 군	29	2,088	418	1,670
영 동 군	23	1,656	331	1,325
증 평 군	14	1,008	201	807
진 천 군	46	3,312	662	2,650
괴 산 군	46	3,312	662	2,650
음 성 군	59	4,248	850	3,398
단 양 군	10	720	144	576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보급대상자 선정보고

시 군	신기술 정보지			비 고
	○○○			
	부			

친환경축산농가 신기술정보지 정산보고

시군	사업량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비 고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12.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생산확대로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

○ 친환경 축산물 품질인증으로 브랜드 파워 및 소비자 신뢰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항생제 무첨가 사양시스템 확대 보급으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수	84호	-	69호	40호	매년 3월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통계로 산출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	36	16	75	75
도 비	-	18	8	37.5	37.5
시군비	-	18	8	37.5	37.5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청풍명월한우 광역브랜드 참여농가중 희망농가
- 농식품부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참여농가중 희망농가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HACCP 지정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 2순위 : HACCP 지정신청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희망농가
- 3순위 : 무항생제축산 및 유기축산인증 희망농가

○ 협조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시군출장소), 민간인증기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1~12월

○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 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수질, 사료, 유해잔류물질 등)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100%(도비 50%, 시군비 50%)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소(900천원), 돼지·닭(450천원)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84개소	75,000 (100%)	37,500 (50%)	37,500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09. 1. 26.
- 신청기관 :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
- 신청서류 :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서식】

○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2010. 1월) · 세부사업지침 (도 ⇒ 시군)

⇓

사업신청 (2010. 1. 26) · 신청서 접수 〔농업인 ⇒ 시군〕

⇓

대상자 선정 (2010. 1. 29) · 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시군 ⇒ 도)

⇓

지급대상자 확정 (2010. 2. 10) · 시군간 사업량 조정 및 확정(도 ⇒ 시군)

⇓

보조금 지급 (2~12월) · 농가별 지급 (시군)

○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별지 2】에 따라 2010. 1. 29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도 (시장·군수)

▪ 사업대상농가에게 2010. 2. 10일까지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된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확인을 거쳐 축산농가 지정 입금계좌로 지급

▪ 신청수수료, 기본검사료(수질, 사료검사, 유해잔류물질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지출 증빙자료 확인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농가별로 지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별지3서식】

9. 행정사항

○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장·군수는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후 도에 보고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 신청서 제출	농가 → 시·군	1. 26	별지 1호
대상자 선정 및 보고	시·군 → 도	1. 29	별지 2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도	·사업종료후 20일 이내	별지 3호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호)	예산액(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84**	**75,000**	**37,500**	**37,500**		
청주시						
충주시	33	29,100	14,550	14,550		
제천시	1	900	450	450		
청원군	13	11,700	5,850	5,850		
보은군	7	6,300	3,150	3,150		
옥천군	1	900	450	450		
영동군	1	900	450	450		
증평군	3	2,700	1,350	1,350		
진천군	2	1,800	900	900		
괴산군	16	14,400	7,200	7,200		
음성군	7	6,300	3,150	3,150		
단양군	-	-	-	-		

[별지1]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신청서

농장명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성명 :		
구분	인증 종류	축종		농 장 소 재 지			지번	사 육 마리수	인증신청 예정일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축산 규모										
합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1. 인증종류 : 무농약(무항생제)
2. 품목별 분류 : (대분류) 소, 돼지, 닭, 기타중 하나를, (소분류)(한우, 돼지, 육계, 산란계 등)

[별지2]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성 명	축종	주 소	인증유형	사 육 마리수	인증신청 예 정 일
			무항생제 축 산 물		

[별지3]

□ 보조금 정산보고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집행잔액 사유 :

○ 첨부 : 인증서사본 1부

13. 깨끗한목장 가꾸기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 위생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곧 깨끗한 목장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전환으로 자발적인 깨끗한 목장 조성 유도

○ 농촌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축산으로 축산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깨끗한 목장 조성을 위하여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의 축사에 목장울타리 휀스(출입문 포함) 설치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깨끗한목장 보급 농가수	50	200호	100호	100호	매년 3월중	깨끗한목장 보급농가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200	200	400	200	200
도 비	100	60	60	30	30
시군비	100	140	140	70	70
자부담	-	-	200	100	1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 소 :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 돼지 : 사육규모 1,000두 이상인 농가
- 닭 :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 :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우선순위

① HACCP 참여농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② 목장 환경개선을 위해 조경수·잔디식재, 화단조성, 꽃심기 등을 자담으로 적극 추진할 농가

③ 친환경축산 및 자연순환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가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장울타리 휀스(출입문 포함) 설치비용 지원

※ 조경수·잔디 식재, 화단조성 등은 사업단비에서 제외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단위 사업비에 미달시는 보조·자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단위사업비 초과시는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구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비 한도액 : 호당 4,000천원(도비 600, 시군비 1,400, 자담 2,000)

○ 시설기준

- 목장울타리 : 메쉬휀스(연두색)
- 출 입 문 : 매쉬휀스망으로 설치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50호	200,000 (100%)	30,000 (15%)	70,000 (35%)	100,000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보고

○ 농가

- 사업대상자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 완료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신청

○ 자금집행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자금집행과 정산시는 사업자등록 소지자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 확인·비치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및 현지 확인후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9.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시까지 적정규격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철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지원시설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후관리에 철저

※ 사업완료 후 5년 이내에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물이 파손·훼손 등이 되었을 경우 30일이내 자부담으로 복구토록 조치하고 만약 미이행시는 보조금 반납조치 등

○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등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 변경 조치후 보고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 식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 → 시·군	1. 31한	서식 1
대상자 선정 보고	시·군 → 도	2. 10한	서식 2
사업추진(정산)보고	시·군→ 도	·분기익월 10일한 ·사업종료후 20일 이내	서식 3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호, 천원)

구 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50**	**200,000**	**30,000**	**70,000**	**100,000**	
청주시	1	4,000	600	1,400	2,000	
충주시	8	32,000	4,800	11,200	16,000	
제천시	1	4,000	600	1,400	2,000	
청원군	14	56,000	8,400	19,600	28,000	
보은군	5	20,000	3,000	7,000	10,000	
옥천군	1	4,000	600	1,400	2,000	
영동군	2	8,000	1,200	2,800	4,000	
증평군	1	4,000	600	1,400	2,000	
진천군	5	20,000	3,000	7,000	10,000	
괴산군	4	16,000	2,400	5,600	8,000	
음성군	7	28,000	4,200	9,800	14,000	
단양군	1	4,000	600	1,400	2,000	

서식 1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목장)　　핸드폰)

○ 목장 소재지 :

○ 가축사육현황

- 축 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사육두수 :　　두・수
- 부지면적 :　　㎡(축사면적 :　　동/　　㎡)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축종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출입문	m				
	휀 스	m				

상기와 같이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축종	대 상 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명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구 분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비 율						

14. 가축생균제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신창균	행)3922 일)220-39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료에 생균제 혼합급여로 가축분뇨 악취제거 및 사료효율 상승
- 파리발생 억제 및 축사환경을 개선, 소화력 증진으로 증체 도모

○ 분뇨악취를 제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소, 돼지, 닭, 오리 축종 사육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성 향상 등 도모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가축생균제 공급농가수	500호	821호	2,474호	634호	매년 3월중	가축생균제 공급농가수

4. 연도별 재정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합 계	3,500	2,500	1,000	1,000	1,000
도 비	610	375	100	100	100
시군비	1,140	875	400	400	400
자부담	1,750	1,250	500	500	5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 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을 등록한 자

○ 대상자 선정 : (별표)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 순위에 의거 선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오리 사육농가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기간 : 2010.1~12월

○ 지원조건 : 도비 10%, 시군비 40%, 자담 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조사료(아미노산제, 생균제, 비타민제, 효소제, 규산염제, 추출제 등) 구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제품으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구입

5. 지원비율

○ 지방비 보조 50%(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보조+자담)

(단위 : 천원)

구분	소			돼 지			닭·오리		
사육 규모	30두 미만	30~ 49	50두 이상	1,000두 미만	1,000~ 1,499	1,500두 이상	30,000수 미만	30,000~ 39,999	40,000수 이상
지원 한도	1,000	1,600	2,000	3,000	4,000	5,000	2,000	3,000	4,000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50%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500호	1,000,000 (100%)	100,000 (10%)	500,000 (50%)	500,000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8. 세부 추진요령

가.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시·군 제품선정 협의회 구성 → 사업대상자 및 제품선정 →

생균제 공급 → 사업추진지도·점검 → 사업완료·정산

나. 세부요령

○ 기본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오리
-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 참여농가 및 축산업 등록농가

②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가축분뇨를 액비 자원화 처리하는 축산농가

○ 시·군 제품선정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축협, 축종별 농가대표 등
- 협의내용 : 생균제 제품선정, 자부담 납부방법 등
- 제품선정 및 구매 : 제품선정협의회에서 제품 선정시 축종별로

선호하는 제품으로 선정하되 품목을 최소화(축종별 1~3품목)하고 공동구매로 구입비 인하 방안 강구

○ 농가공급 제품선정

-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보조사료(아미노산제, 생균제, 비타민제, 효소제, 규산염제, 추출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제품으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 농가 공급방법

- 시·군에서는 자체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공급
- 생균제 공급시 장기간 보관에 따른 생균제 효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내에 사용되도록 사업량에 따라 3~4차에 걸쳐 공급

○ 사업비 지원

- 신청농가의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개소당 한도액(축종별·규모별) 이내에서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가능(보조 50%, 자담 50%)
- 농가에서 자부담을 확인후 보조금 집행, 특히 자부담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 확인 철저

다.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중간 정산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완료·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라. 사후관리

○ 농가별로 생균제 사용 효과에 대한 설문 조사로 제품선정 및 사용 방법 지도 자료로 활용

9.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2010. 02. 10일까지(별첨 서식1)

○ 제품구입 상황보고 : 2010. 06. 30(별첨 서식2)

○ 사업완료·정산보고 : 2010. 12. 31일까지(별첨 서식3)

○ 설문조사 결과보고 : 2010. 06. 30, 2010. 10. 30(별첨 서식4)

별첨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호,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500	1,000,000	100,000	400,000	500,000	
청주시	3	6,000	600	2,400	3,000	
충주시	68	136,000	13,600	54,400	68,000	
제천시	25	50,000	5,000	20,000	25,000	
청원군	91	182,000	18,200	72,800	91,000	
보은군	34	68,000	6,800	27,200	34,000	
옥천군	19	38,000	3,800	15,200	19,000	
영동군	21	42,000	4,200	16,800	21,000	
증평군	19	38,000	3,800	15,200	19,000	
진천군	73	146,000	14,600	58,400	73,000	
괴산군	60	120,000	12,000	48,000	60,000	
음성군	78	156,000	15,600	62,400	78,000	
단양군	9	18,000	1,800	7,200	9,000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축 종	사육두수	사 업 비(천원)			
주소	성 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2

제품 구입내역 및 공급현황

제품명	회사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제품특성
합 계						

서식 3

사업완료·정산보고

(단위 : 호, 천원)

사업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4

설문조사 결과보고

□ 조사기간 :

□ 농가설문조사 결과

○ 생균제 투여후 악취감소 효과

설문 농가수	효과가 크다	보통이다	효과가 없었다

○ 파리발생 감소 효과

설문 농가수	파리 발생이 전혀 없었다	종전보다 많이 감소했다	보통이다	효과가 없었다

○ 가축생균제지원사업 계속추진 여부

설문 농가수	중단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야 한다	비 고

□ 개선 및 건의내용

○

○

○

15.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선형심사비 및 정액대 지원

○ 등록료 및 검정비 지원으로 개체별 능력우 관리 및 개량방향 제시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젖소검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09-363, '09.9.16)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검정사업 참여확대 및 두당 산유량 증가

- '12년까지 검정우 참여율 85%, 두당 산유량 10,000kg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유우검정 참여율(%) - *(검정우/경산우)*	80	79	78	76	2011.3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에서 발표하는 행정구역별 검정사업 실적으로 산출
▪ 검정우 두당 연간 산유량(kg)	9,600	6,645	6,900	9,443	2011.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까지	'08	'09	**'10**	'11	'12
사업량(천두)		20	6.6	7	**7**	7	7
사업비	합 계	738	333	350	**315**	315	315
	국 비						
	도 비	325	103	105	**95**	95	95
	시군비	413	230	245	**220**	220	220
	자부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 :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사업 참여 희망농가(신규농가 포함)

○ 검정기관 :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충북낙협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젖소검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09-363) 및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젖소 선형심사비, 정액대, 혈통등록료, 검정료

4.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두당 45천원

○ 두당 지원범위 : 정액대 20, 등록비 8, 선형심사비 7, 검정료 10

6.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내용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지원단가(한도액)
		계	도 비	시군비	
계	**7,000**	**315,000**	**94,500**	**220,500**	**두당 45천원**
정 액 대	7,000	140,000	42,000	98,000	20천원/두당(1앰플)
혈통등록비	7,000	56,000	16,800	39,200	기초,혈통 : 5~8천원/두 고등 : 20천원/두
선형심사비	7,000	49,000	14,700	34,300	7천원/두당
검 정 료	7,000	70,000	21,000	49,000	종개협 1,800원/두,월 충북낙협 2,500원/두,월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따로붙임(별첨 1)

※ 정액대 및 혈통등록비가 두당 지원단가 이하인 경우 남은 금액은 검정료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7. 세부추진요령

1 세부실시요령

가. 대상축 선정

○ 기초등록 이상 어미소에서 태어난 미경산우 및 경산우로 혈통등록이 가능한 자질 및 능력이 좋은 건강한 젖소

○ 검정대상우가 폐사, 도태, 사고시 종축개량협회에 대상축 재선발 의뢰

나. 대상축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 시·군에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대상축에 대한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의뢰(기 등록을 필한 소는 제외)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선형심사 후 개체별로 적합한 우수정액을 선정하여 시·군 및 농가에 개별통보

다. 인공수정

○ 농가에서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부터 추천된 우수정액으로 수정하고 수태가 되지 않을 때에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천정액 활용

○ 농가는 공급받은 정액의 정액증명서를 필히 교부받을 것

라. 검정사업

○ 시·군에서는 농가별 검정대상우를 종축개량협회 및 충북낙협에 의뢰

○ 검정 수행기관에서는 검정결과를 시·군 및 농가에 개별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검정료 청구

○ 검정기관에서는 분석한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농협중앙회 젖소개량부로 이송

2 추진체계

○ 도

- 지원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

○ 시·군

- 검정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농가를 선정
- 대상자 우선순위 : ①기존 검정사업 참여 농가 ②신규참여 농가
-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정액대, 등록료, 선형심사비, 검정료) 확정후 사업대상자 및 대상우를 검정기관 및 해당농가에 통보

○ 검정기관 추진사항

- 종축개량협회에서는 시·군에서 사업대상자가 통보되면 대상우에 대한 등록 및 선형심사, 혈통등록을 4월까지 완료하고 결과(농가별, 개체별)를 해당 시군 및 농가에 개별 통보
- 젖소검정을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고, 검정우의 개체별 검정성적을 3년 이상 기록관리 유지
- 검정성적표는 매월 해당시군 및 농가에 통보
  · 시·군에서는 개체별 검정실시 확인 자료로 사용
  · 농가에게 검정성적표를 설명해주고 경영 및 사양관리에 반영토록 지도
- 검정사업 완료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시군·농가에 통보하여 젖소개량에 활용토록 조치
- 검정우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교배 종모우 지정 통보

○ 검정농가

- 젖소능력검정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농가 → 시·군
- 검정우는 반드시 등록시켜야 함
- 종축개량협회의 선형심사 및 혈통등록 업무, 검정원의 원활한 검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선형심사 결과 종개협에서 추천한 우수한 정액으로 인공수정 실시
- 농가는 검정성적표를 활용하여 젖소개량 및 목장경영 개선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계획 시달)이전에 사업시행 된 경우 시군에서 '10년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비 지급

3 자금집행과 정산

○ 사업실적 확인

- 정액대 :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계산서 등
- 등록 및 선형심사 : 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하는 등록 및 선형심사 결과표(등록·선형심사 전산입력자료)
- 검정료 : 검정기관에서 매월 송부하는 검정성적 기록표

○ 사업비 지급방법

- 선형심사료,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비 : 실적 확인후 지급
- 검정료 : 실적확인후 분기별 지급

8.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관련 증빙자료를 징구 확인, 검정하고 사업비 집행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허위보고 작성 농가는 사업대상 제외조치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참여 신청	농가 → 시·군	2. 28	서식 1호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시·군→도, 검정기관	2. 28	서식 2호
검정대상우 등록 및 선형심사, 검정결과 통보	검정기관 → 시·군	4. 30	종축개량협회작성
사업추진완료 및 정산보고	시·군 → 도	12. 31	서식 3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7,000**	**315,000**	**94,500**	**220,500**	
청주시	170	7,650	2,295	5,355	
충주시	470	21,150	6,345	14,805	
제천시	50	2,250	675	1,575	
청원군	2,350	105,750	31,725	74,025	
보은군	780	35,100	10,530	24,570	
옥천군	150	6,750	2,025	4,725	
영동군	570	25,650	7,695	17,955	
증평군	210	9,450	2,835	6,615	
진천군	1,270	57,150	17,145	40,005	
괴산군	240	10,800	3,240	7,560	
음성군	740	33,300	9,990	23,310	
단양군	-	-	-	-	

서식 1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 참여신청서

□ 신청자현황

○ 목장명 :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농장 소재지 :

□ 사육두수 : 두(초임우 , 착유우 , 건유우 , 육성우)

□ 신청내역

구 분	두 수	사업비 투자계획(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기검정우
정 액 대						: 두
혈통등록비						
선형심사비						○신규참여
검 정 비						: 두

상기와 같이 유우군 능력검정 개량지원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 총 괄

(단위 : 호, 두, 천원)

구분	계획						비 고
	호수	사업량	사업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기검정우 : 두
정 액 대							
등 록 료							
선형심사료							○신규참여 : 두
검 정 료							

□ 대상자 선정내역

주 소	성 명	사 육 두 수	사업참여 두수			
			정액대	등록료	선형심사료	검정료
합 계						

서식 3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구 분	계 획						실 적						도비 집행 잔액 (원)
	호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호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정액대													
등록료													
선형심사료													
검정료													

16. 유우군 능력검정 평가회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1. 목 적

○ 정확한 개체혈통 및 능력조사 결과에 의한 선발·계획 교배로 체계적인 젖소개량 및 낙농경영 개선 도모

○ 유우군 능력검정 종합평가·분석 및 정보공유, 개량방향 제시

2. 행사개요

○ 행사주관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협조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산유능력검정회, 충북지역검정회

○ 행사일시 : 2010. 3 ~ 5월중(1일)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 행사내용 :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종합평가 및 분석, 교육 등

○ 참석대상 : 검정사업 참여농가, 시군 업무담당자, 관련단체 등

○ 지원내용 : 교육교재 제작, 강사료, 원고료, 현수막 제작비 등

3. 세부추진요령

1 기관별 추진사항

○ 도
- 행사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비 정산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행사 세부계획 수립
- 행사장 준비 및 행사주관
- 교육강사 섭외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정산 보고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09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10 추진계획 수립
- 평가자료 작성 및 자료인쇄 등

2 자금집행 및 정산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사업주관기관인 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서는 평가회 완료 후 1월이내에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제출

○ 행사비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

○ 행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집행 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4. 행정사항

○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은 젖소 산유능력검정 평가회 개최 1개월 이전에 세부 행사계획 수립 제출

17. 낙농헬퍼(도우미)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낙농가에게 휴식제공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낙농 생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낙농업 경영 유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3. 성과목표 및 지표

○ 착유농가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호수 확대

- 낙농헬퍼 이용을 '12년까지 착유농가의 80%이상 이용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		
▪ 착유농가	400	449	432	412	2011.3	시·군 및 충북낙협의 추진실적을 근거로 산출
▪ 이용농가	280	246	249	259	2011.3	
▪ 이용실적(%) *-(이용농가/착유농가)*	70	55	58	63	2011.3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까지	'08	'09	**'10**	'11	'12
사업량(일수)		2,200	1,300	900	**900**	1,000	1,000
사업비	합 계	420	195	135	**135**	170	170
	국 비						
	도 비	93	47	32	**32**	41	41
	시군비	177	109	76	**76**	95	95
	자부담	150	39	27	**27**	34	34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대상 : 착유농가로서 헬퍼이용 희망농가(낙우회 등)

○ 사업수행기관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착유농가로서 헬퍼사업 희망 농가 및 생산자단체 (낙우회 등)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우선순위 :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헬퍼(도우미)요원이 대행하는 착유 등 목장관리 인건비 지급

4.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천원/1일(할증료는 농가 전액 자부담)

○ 지원한도 : 호당 연간 10일 이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지 원 단 가	비 고
기 본 료 (착유우 기준)		○ 20두까지 : 150천원	- 착유두수가 20두 이하인 경우도 기본료 동일
할증료	착 유 우	○ 20두초과 두당 3천원	- 농가 전액자부담
	휴일할증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호당 30천원 (농가 전액 자부담)	○ 휴일할증과 애·경사 중복시 할증료 제외 (사망신고서, 청첩장 등 첨부)

※ '09년 미이용농가는 지원 제외할 수 있으며, 호당 연간 10일이내에서 배정일 탄력적 이용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900일	135,000	32,400	75,600	27,000

※ 시군별 지원내역 : 따로붙임(별첨 1)

7. 세부추진요령

1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문헬퍼 선발(2명 1팀) : 축산업에 종사하였거나, 낙농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필하였거나 낙농업에 종사,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를 헬퍼(도우미)요원으로 선발

2 낙농헬퍼(도우미) 지원 및 사업비 집행

○ 지원대상자 : 젖소 착유농가

○ 헬퍼이용 희망농가 및 낙우회에서는 매월 20일까지 익월의 이용 예정일 및 헬퍼이용 농가명단을 충북낙협으로 신청

○ 헬퍼(도우미)는 충북낙협에서 이용농가 배정시 임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확인서에 농가 확인서명을 받아 충북낙협에 제출

○ 충북낙협에서는 이용확인서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이용료를 산정 추진실적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 농가 소속 시·군에 익월 10일까지 보조금 신청(서식 별도 송부)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을 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 보조금을 충북낙협에 교부

○ 충북낙협에서는 농가에게서 자부담 징구하여 보조금과 자담분을 헬퍼(도우미)요원에게 개별계좌에 입금처리

8.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낙농헬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계획시달) 이전에 이용한 경우 사업수행기관 확인 후 적정하면 '1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용료 지급

○ 공통사항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기한	서 식
사업참여 신청서	농가,낙우회 → 시·군	1. 31	서식 1호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시·군→ 도,사업수행기관	2. 28	서식 2호
보조금 지급 요청	사업수행기관 → 시·군	· 익월 10일까지 (헬퍼이용 확인서 첨부)	서식 4호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시·군, 사업수행기관 → 도	12. 31	서식 3호

별첨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일, 천원)

구분	배정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900	135,000	32,400	75,600	27,000	
청주시	27	4,050	972	2,268	810	
충주시	64	9,600	2,304	5,376	1,920	
제천시	22	3,300	792	1,848	660	
청원군	340	51,000	12,240	28,560	10,200	
보은군	81	12,150	2,916	6,804	2,430	
옥천군	14	2,100	504	1,176	420	
영동군	40	6,000	1,440	3,360	1,200	
증평군	25	3,750	900	2,100	750	
진천군	152	22,800	5,472	12,768	4,560	
괴산군	33	4,950	1,188	2,772	990	
음성군	102	15,300	3,672	8,568	3,060	
단양군						

서식 1

낙농헬퍼(도우미)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신청 현황

<개별농가>

사 업 대 상 자			이용신청 일 수	사육두수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계	착유우	기 타

<낙우회 등>

사 업 대 상 자			이용신청 일 수	사육두수		
신청단체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계	착유우	기 타

※ 개별농가 신청내역 첨부

상기와 같이 낙농헬퍼(도우미) 사업에 참여코자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단체(농가)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낙농헬퍼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주 소	성명	착유두수	신청일수	배정일수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사업추진 실적 정산보고

<○○시·군명>

구 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호수	이용일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획							
실 적							
비 율							

서식 4

낙농헬퍼(도우미) 이용 확인서

□ 헬퍼요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 헬퍼이용내역

낙농헬퍼 이용자			헬퍼이용내역		기 본 이용료 (천원)	할증료 (천원)	농가확인 (자필서명)
주　소	성 명	착유 두수	이용 기간	이용 일자			
계							

상기와 같이 낙농헬퍼(도우미) 이용 실적을 확인합니다.

헬퍼요원 성명 :　　(서명또는인)

2010.　　.　　.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3 자급사료생산 안정대책

18.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축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2년 7,000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07	'08	'09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조사료 자급율(%)	84	78	80	82	2011.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 사료작물 재배면적(ha)	5,000	1,480	2,233	3,726	2011.3	시·군별 종자공급량 및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 청보리등 동계사료작물 재배면적(ha)	3,500	753	1,480	2,547	2011.3	시·군별 파종면적 집계

4. 2010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종자·볏짚 처리비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사 업 량		3종	종자 360톤 비닐 6,490롤	61,111톤	28개소
사업비	합 계	8,867	1,067	3,667	4,133
	국 비	3,760	320	2,200	1,240
	도 비	812		440	372
	시군비	1,895		1,027	868
	자부담	2,400	747		1,653

18-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 사업시행 : '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함

2.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톤)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61,111**	**3,666,666**	**2,200,000**	**440,000**	**1,026,666**		
청주시	400	24,000	14,400	2,880	6,720		동계작물 : 톤당 60천원 하계작물 톤당 30천원
충주시	12,500	750,000	450,000	90,000	210,000		
제천시	2,000	120,000	72,000	14,400	33,600		
청원군	15,471	928,266	556,960	111,392	259,914		
보은군	8,000	480,000	288,000	57,600	134,400		
옥천군	7,000	420,000	252,000	50,400	117,600		
영동군							
증평군	400	24,000	14,400	2,880	6,720		
진천군	2,500	150,000	90,000	18,000	42,000		
괴산군	7,000	420,000	252,000	50,400	117,600		
음성군	5,500	330,000	198,000	39,600	92,400		
단양군	340	20,400	12,240	2,448	5,712		

18-2.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1. 사업시행 : '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함

2.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28**	**4,133,343**	**1,240,000**	**372,000**	**868,000**	**1,653,333**	
청주시							* 개소당 150백만원
충주시	5	750,000	225,000	67,500	157,500	300,000	
제천시	1	150,000	45,000	13,500	31,500	60,000	
청원군	11	1,583,343	475,000	142,500	332,500	633,333	*청원군 11개소 중 1개소는 83,333천원
보은군	3	450,000	135,000	40,500	94,500	180,000	
옥천군	4	600,000	180,000	54,000	126,000	240,000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1	150,000	45,000	13,500	31,500	60,000	
괴산군	1	150,000	45,000	13,500	31,500	60,000	
음성군	2	300,000	90,000	27,000	63,000	120,000	
단양군							

3. 2010년 조사료 경영체 지원대상자 선정근거

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구비 법인으로 신규경영체 참여 우선 배정(기지원 영농법인 배정 제외) : **18개소**

시군별	사업량	지 원 경 영 체	비 고
합 계	**18**		
충주시	3	주신낙농영농법인, 중앙탑한우영농법인, 초원한우영농법인	
제천시	1	봉양한우나라영농법인	
청원군	5	우리영농법인, 흙사랑영농법인, 미원축산영농법인, 부용한우영농법인, 상동축산영농법인	
보은군	3	솔우영농법인, 원광영농법인, 보은황토영농법인	
옥천군	3	대청영농법인, 대청호보리영농법인, 금강한우영농법인	
진천군	1	진천영농법인	
괴산군	1	연풍한우영농법인	
음성군	1	성림축산영농법인	

※ '10년 재배계획(예상)면적이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30ha로 조사되어 기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사료되어 법인설립 1년 경과 영농법인에 배정

나.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서 농·축협과 연계 신청한 경우 재배계획 면적이 30ha이상인 생산자단체 배정 : **8개소**

구 분	**계**	충주시	청원군	옥천군	음성군
개소수	**8**	2	4	1	1
농축협 명 칭		중원농협 산척농협	남이농협 옥산농협 청주축협 현도농협	안남농협	음성축협

※ 청원군 4개소중 1개소의 사업비는 83,333천원 배정

다. 농·축협 및 영농법인에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대단위 단지 직영 재배하는 경우 기지원을 받고도 장비 부족으로 추가 신청시 1개소 추가 배정 : **2개소(청원)**

4. 조사료 경영체 지원대상자 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지원 대상 경영체	비 고
계	**28**		
청주시			
충주시	5	주신낙농영농법인, 중앙탑영농법인, 초원한우영농법인, 중원농협, 산척농협	
제천시	1	봉앙한우나라영농법인	
청원군	11	우리영농법인, 흙사랑영농법인, 미원축산영농법인, 부용한우영농법인, 상동축산영농법인, 남이농협, 옥산농협, 청주축협, 현도농협, 청남농협, 푸른초장영농법인	
보은군	3	솔우영농법인, 원광영농법인, 보은황토영농법인	
옥천군	4	대청영농법인, 대청호보리영농법인, 금강한우영농법인, 안남농협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1	진천영농법인	
괴산군	1	연풍한우영농법인	
음성군	2	성림축산영농법인, 음성축협	
단양군			

18-3.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

1. 사업시행 : '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함

2.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1,066,665**	**320,000**	**0**	**0**	**746,665**	
청주시	종자·비닐 실소요량	9,000	2,700			6,300	
충주시	종자·비닐 실소요량	213,333	64,000			149,333	
제천시	종자·비닐 실소요량	29,333	8,800			20,533	
청원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251,000	75,300			175,700	
보은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137,333	41,200			96,133	
옥천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70,333	21,100			49,233	
영동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48,000	14,400			33,600	
증평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12,333	3,700			8,633	
진천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88,000	26,400			61,600	
괴산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103,000	30,900			72,100	
음성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101,667	30,500			71,167	
단양군	종자·비닐 실소요량	3,333	1,000			2,333	

18-4.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 사업시행 : '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함

2.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확정시 사업량 및 사업비 별도 시달

19.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트랙터 및 생산장비)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기계·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2년까지 대단위사료작물 재배단지(20ha이상)별 조사료용 기계·장비 1셑트씩(트래터+장비) 지원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07	'08	'09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조사료용 기계·장비 보급 수(대)	트랙터	36	23	26	31	2010.3	'10년 농림사업 및 자체사업의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실적
	결속기 등	35	23	26	32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3,385	3,796	4,016	**5,183**	6,000	6,000
국 비	117	220	1,200	**1,240**	1,800	1,800
도 비	562	612	421	**561**	540	540
시군비	1,513	1,606	1,134	**1,309**	1,260	1,260
자부담	1,193	1,358	1,261	**2,073**	2,400	2,40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축협, 한우협회(시·군단위), 지역낙우회(읍·면단위), 영농조합법인(농림사업사업시행지침 법인 지원요건 구비)등 생산자단체

- 개별농가는 지원제외(개인 사용목적으로 단체를 허위 결성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단체를 철저히 검증)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20ha이상)로 이용농가 10호이상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단가 : 트랙터 70,000천원/대, 생산장비 61,250천원/조

○ 지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등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사업단가는 20ha당 1셀트(트랙터+곤포장비)를 기준으로 131,250천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트랙터와 곤포장비를 개별 지원 시에도 20ha를 기준으로 지원

○ 기준 및 범위 : 조사료생산 전용트랙터와 조사료생산 장비를 가급적 동일생산자단체에게 지원하여 장비의 활용도 제고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2종	8셀트	1,050,000	189,000	441,000	420,000
조사료생산 전용트랙터	8대	560,000	100,800	235,200	224,000
조사료생산 장비	8조	490,000	88,200	205,800	196,000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별첨

7. 세부추진요령

1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활용도 등을 감안 가급적 인접 또는 인근 읍·면단위 회원농가들로 구성 선정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을 규모화, 단지화한 생산자단체에게 우선 지원

○ 사업신청자는 조사료 재배면적, 장비운영 계획, 장비 보관장소 및 사업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제적으로 작성 신청

○ 시·군에서는 가급적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활용도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자 선정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장비구입가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권 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 장비별 기준금액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가격표 준용

○ 사업대상자는 조사료용 기계·장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비, 수량, 규격, 단가 등) 변경시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군에서 변경승인하고 도에 보고

○ 조사료용 기계·장비는 가급적 동계사료작물 수확이전에 구입토록 지도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군에서는 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농협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

- 농협에서 구축한 농기계 기대번호(제조번호)를 이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 실행 여부 확인 후 보조금 등 집행

8. 행정사항

○ 참여회원의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남는 잉여기간을 이용하여 인근 축산농가의 작업 대행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후 기계·장비 지원실적, 재배면적 등 실적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도에 보고

○ 지원 기계·장비는 제조번호 및 형식표시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농림사업의 조사료용 기계·장비 준용)

○ 시군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연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충청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내 본사나 사업장을 둔 향토기업 기계·장비 우선 구매**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 구입

○ 보조금으로 취득한 조사료생산 전용트랙터의 사후관리 기간

- 농림시행지침의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 준용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식 2> : 2010. 2. 28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10. 12. 31

별 첨

조사료생산 전용 트랙터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8**	**560,000**	**100,800**	**235,200**	**224,000**	
청주시						
충주시	1	70,000	12,600	29,400	28,000	
제천시	1	70,000	12,600	29,400	28,000	
청원군	1	70,000	12,600	29,400	28,000	
보은군	1	70,000	12,600	29,400	28,000	
옥천군	1	70,000	12,600	29,400	28,000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1	70,000	12,600	29,400	28,000	
괴산군	1	70,000	12,600	29,400	28,000	
음성군	1	70,000	12,600	29,400	28,000	
단양군						

조사료생산 장비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조)	예 산 액 (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8**	**490,000**	**88,200**	**205,800**	**196,000**	
청주시						
충주시	1	61,250	11,025	25,725	24,500	
제천시	1	61,250	11,025	25,725	24,500	
청원군	1	61,250	11,025	25,725	24,500	
보은군	1	61,250	11,025	25,725	24,500	
옥천군	1	61,250	11,025	25,725	24,500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1	61,250	11,025	25,725	24,500	
괴산군	1	61,250	11,025	25,725	24,500	
음성군	1	61,250	11,025	25,725	24,500	
단양군						

서식 1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신청자

○ 신 청 자

- 생산자단체명 : (대 표 자 :)
- 주소·연락처 : (전화번호 :)

○ 소속농가 현황

- 참여농가 : 호
- 사육두수 : 두(한육우 , 젖소 , 기타)
- 사료작물 재배면적 : ha(동계작물 , 하계작물)

○ 장비보관 예정지 :

□ 현재 장비보유현황

구 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로 더	기 타
대 수	마력/대							

□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계획

농기계 명 칭	제 조 업체명	수량	규 격 (마력)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구입예정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대상자 현황

○ 생산자단체명 : (대 표 자 :)

○ 주소·연락처 : (전화번호 :)

○ 소속농가 현황

- 참여농가 : 호
- 사육두수 : 두(한육우 , 젖소 , 기타)
- 사료작물 재배면적 : ha(동계작물 , 하계작물)

□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계획

장 비 명	제 조 업체명	수 량	규 격 (마력)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구입 예정일)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서식 3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현황

○ 생산자단체명 : (참여회원 :)

- 주소·대표자 : (전화번호 :)

□ 사업추진 실적

장비명	제 조 업체명	수 량	규격 (마력)	제조 번호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별표 1>

조사료용 기계·장비 관리카드

1. 생산자단체(대표자)	
2. 지 원 연 도	
3. 회원수 및 축종, 사육두수	
4. 장비보관소재지(전화번호)	
5. 사 업 비(천원)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6. 사 업 량(대)

농기계 명 칭	계	트랙터 (마력/대)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랩핑기	적재기	기타
		/						

7. 사료작물 재배면적(ha)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춘파용						
추파용						

8. 조사료 생산실적(톤)

구 분	계	옥수수 · 수단	호밀, 청보리	IR	볏짚곤포	기 타
2010						
2011						
2012						
2013						
2014						

20.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료작물 재배단지 확보에 필요한 농지임차료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자급조사료 확보기반 마련

○ 노는 땅에 사료작물 재배로 주변경관 개선 및 생산비 절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축산 실천전략 추진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조사료 자급율 '12년 90%목표 달성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07	'08	'09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임차 조사료 재배면적	1,500	-	1,000	1,500	2011.3	농지임차 사료작물 계획대비 실적으로 산출
▪ 조사료 자급율(%)	84	78	80	82	2011.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 청보리등 동계사료작물 재배면적(ha)	3,500	753	1,480	2,547	2011.3	시·군별 파종면적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600	1,167	900	1,200	1,200
국 비						
도 비		180	350	270	360	360
시군비		420	817	630	840	840
자부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소 사육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경종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단체)

○ 지원대상 :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논뒷그루(겨울철 휴경논)

○ 임차요건

- 개별농가 : 1ha이상
- 대단위단지 : 20ha이상으로 인접 읍·면 지역내 단지화가능 지역

단, 지가농지 및 식계 존·비속 농지와 소 사육농가(10두이상)의 농지임차는 지원 제외

○ 임차농지 조건 : 가급적 경지정리된 논으로 기계화작업이 가능하며, 배수가 양호한 토지로 동계사료작물 재배적합 농지

○ 임차계약 체결 : '10. 9월말

- 개별농가 : 축산농가와 토지소유자(실경작자)와 계약
- 대단위단지 : 생산자단체 대표와 토지소유자(실경작자)와 계약
- 단, 경종농가에서 임차계약을 기피할 경우 농지 실경작확인서로 농지임차계약서를 갈음 할 수 있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농가(단체)에서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임차료

4.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내용 : 축산농가(단체)에서 경종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료작물 재배시 농지임차료 지원

○ 지원단가 : 600천원/ha당(초과시 자부담)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1,500	900,000	270,000	630,000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별첨

7. 사업 추진요령

○ 시·군에서는 자체세부추진계획 수립 홍보 및 시행

○ 사업신청

- 개별농가 : 축산농가 ⇒ 읍·면·동 ⇒ 시·군
- 대단위단지(20ha이상) : 생산자단체(5인이상) ⇒ 시·군

○ 사업신청서 검토 및 확인 : 시·군에서는 재배대상 농지, 토지대장 또는 농지원부, 농지임차계약서 확인

○ 대상자 선정 : 시·군 책임하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비 지급절차 : 농지임차 확인 ⇒ 사료작물종자 파종 확인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시·군에서는 축산단체(농가)에서 경종농가에게 임차료가 실제 지급됐는지 확인

8. 행정사항

○ 시·군(읍면동)에서는 대상지 선정 및 임대차계약(실경작확인)에 적극 협조

○ 화학비료는 가급적 자제하고 액비 등 축산분뇨를 사용토록 유도

※ 시·군에서는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대표와 협의하여 대단위단지에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조치

○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농지원부), 임차료 지급 영수증(무통장입금) 등

○ 단위사업비 미달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시는 자부담으로 추진

○ 보고사항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서식	비 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2010. 9. 30	서식 2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0. 12. 31	서식 3	

별 첨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ha)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500**	**900,000**	**270,000**	**630,000**		
청주시	20	12,000	3,600	8,400		
충주시	400	240,000	72,000	168,000		
제천시	70	42,000	12,600	29,400		
청원군	400	240,000	72,000	168,000		
보은군	200	120,000	36,000	84,000		
옥천군	130	78,000	23,400	54,600		
영동군	20	12,000	3,600	8,400		
증평군	20	12,000	3,600	8,400		
진천군	70	42,000	12,600	29,400		
괴산군	100	60,000	18,000	42,000		
음성군	60	36,000	10,800	25,200		
단양군	10	6,000	1,800	4,200		

서식 1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 생산자단체(농가) : (참여회원 : 명)

○ 주 소 :

○ 가 축 사 육 두 수 : 두(한육우 , 젖소 , 기타)

□ 임차농지 현황

읍면동	리	번지	지 목	지적(㎡)	비 고
계					

□ 사료작물 재배계획

○ 재배면적 : ha

○ 재배품종 :

○ 종자확보량 : (호맥 , 청보리 , IR , 기타)

상기와 같이 2010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지 임대차계약서 부.

2010. . .

축산단체명(농가) : (인)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료작물 재배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사료작물 재배단지 현황

사업대상자		축 종 (사육두수)	재배 면적 (ha)	지 목	사 업 비(천원)		
주 소(단체명)	성 명 (대표자)				계	도 비	시군비
계							

서식 3

사료작물 재배단지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사료작물 재배단지 현황

사업대상자		재배 면적 (ha)	지 목	사 업 비(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주 소(단체명)	성 명 (대표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별 첨

농 지 임 대 차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농지표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차료]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한다.

임차료	金 (₩)	임차료 지급방법	

제2조 [명도] 위 농지의 명도는 년 월 일 부터 로 한다.

제3조 [임대차기간] 위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로 정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요구에 일 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상대방이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사항 :

본 계약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印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차인	주 소			印
	주민등록번호	성명		

별 첨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보관용>

영 수 증

임대인 성명 : (₩)

一金 : 원정

농지의 표시 :

상기금액을 위 표시 농지에 대한 농지임차료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 합니다.

임대인 주소 :

성 명 : (인)

임차인 주소 :

성 명 : (인)

영 수 일 자 : 년 월 일

<시군 제출용>

영 수 증

임대인 성명 : (₩)

一金 : 원정

농지의 표시 :

상기금액을 위 표시 농지에 대한 농지임차료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본 영수증을 발행 합니다.

임대인 주소 :

성 명 : (인)

임차인 주소 :

성 명 : (인)

영 수 일 자 : 년 월 일

별 첨

농지 실 경작 사실 확인서

《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농 지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합 계							

《실경작자 현황》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확인자 현황》

□ 마을대표

○ 읍면동 리 마을대표 : (인)

○ 마을대표 전화번호 :

□ 담당공무원

○ 읍면동 직 성 명 : (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함.

2010년 월 일

읍면동장 직 인

시장·군수 귀하

21.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1. 목 적

○ 사료작물을 이용 사일리지 제조시 사일리지 전용 발효제를 첨가함으로써 사료의 영양가치 증진

○ 사일리지의 장기보관 가능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

2. 사업대상자

○ 동계사료작물(호맥 등)을 이용 사일리지 제조 축산농가(단체)

3. 지원자격 및 요건

○ '09년 동계사료작물을 재배실적이 있는 축산농가(단체)

○ 지원대상 : 호맥,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사료작물

○ 대상자선정 : (별표1~6) "축종별 시책사업 농가선정 기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전용 발효제 지원

5.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ha당 30천원

- 산출근거 : 곤포 1개당 1,154원/ha당 곤포 26개 기준

7.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2,000	60,000	18,000	42,000	

※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 별첨

8. 사업추진 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희망자의 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축산사업 대상 농가선정 기준표(낙농) 적용
- 사일리지 발효제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농가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입(공개입찰, 조달구입 등)하여 농가에 일괄 배부
- 제품 선정시 효과가 입증된 제품 및 사일리지 전용 발효제 구입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하고 도에 보고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업대상자**

- 농가에서는 사일리지 전용 발효제를 공급받은 즉시 제품 적정보관
- 공급되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기 살포후 사일리지 제조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 관례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시 제품 공급업체에 위임지급 가능

○ 시군에서는 사업실적 확인,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9.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시군에서는 본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2> : 2010. 2. 28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2010. 12. 31

별 첨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ha)	예 산 액(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2,000**	**60,000**	**18,000**	**42,000**		
청주시	14	420	126	294		
충주시	400	12,000	3,600	8,400		
제천시	64	1,920	576	1,344		
청원군	513	15,390	4,617	10,773		
보은군	267	8,010	2,403	5,607		
옥천군	224	6,720	2,016	4,704		
영동군	36	1,080	324	756		
증평군	15	450	135	315		
진천군	77	2,310	693	1,617		
괴산군	217	6,510	1,953	4,557		
음성군	161	4,830	1,449	3,381		
단양군	12	360	108	252		

서식 1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사업신청서

1. 단체명(대표자,농가) : **(전화번호 :)**

2. 주 소 :

3. 축종 및 두수 :

4. 사업신청 내역

재 배 면 적(ha)				신 청 면 적(ha)				사 업 비(천원)		
계	호맥	청보리	IR등	계	호맥	청보리	IR등	계	도 비	시군비

201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사일리지 발효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사업대상자		사 업 량(ha)				사 업 비(천원)		
주 소(단체명)	성 명 (대표자)	계	호맥	청보리	IR등	계	도 비	시군비
계								

2010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자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주 소 (단체명)	성 명 (대표자)	사업량 (ha)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ha)	계	도비	시군비	
계										

22. 조사료 분쇄·혼합시설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1. 목 적

○ 자가재배한 조사료(청보리, 호밀 등)와 RPC공장의 부산물(미강 등)을 분쇄·혼합 사료화하여 부존자원 활용 극대화

○ 농산부산물 및 자급조사료를 혼합사료 제조원료로 이용하여 배합사료위주의 사양관리 탈피 및 생산성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청원군수

○ 사업기간 : 2010. 1 ~ 6월

○ 사업내용 : 조사료 분쇄·혼합시설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등 부대설치비 지원

3.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축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분쇄·혼합시설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 전기승압, 분쇄시설, 혼합시설, 계량시설 등

5.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1	60,000	14,400	33,600	12,000	

7. 사업시행요령

1 추진체계

○ 사업대상자 선정 : 청원군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적격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 사업계획서 첨부

2 사업계획서 내용

- 생산자단체 현황, 시설내용, 사업비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자부담 확보계획 등

○ 사업계획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청원군에서 사업비 이내에서 변경승인하고 도에 보고

○ 사업추진 : 청원군에서는 추진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8.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가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철저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서식 1> : 2010. 2. 28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서식 1

조사료 분쇄·혼합시설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생산자단체 현황

○ 생산자단체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참여회원수 : (축종 및 사육두수 :)

○ 설치예정지 :

□ 사업계획

세 부 시설명	수 량 (대)	규 격	단 가 (천원)	투 자 계 획 (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 담	
계								

서식 2

조사료 분쇄·혼합시설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생산자단체 현황

○ 생산자단체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시설명	수량 (대)	규격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23. TMR사료 포장재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1. 목 적

○ TMR사료공장을 운영중인 충북낙협에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

○ 포장재 제작·구입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및 사료비 인하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청원군수

○ 사업기간 : 2010. 1~12월

○ 사업내용 : TMR사료 포장재(20kg용) 제작·구입비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4. 지원비율

○ 도비 50%, 자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지원단가 : 200원/1매

- 단, 제작단가 변동시 사업비 범위내에서 물량 조정 가능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매)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1,000,000	200,000	100,000	-	100,000	

7. 세부추진요령

1 추진체계

○ 도

- 기본계획 수립 시달 및 지도감독 등 제반사항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청원군**

-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지원계획 수립 추진, 공급실적 확인,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2 세부 추진요령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계획수립 시행 : 사업신청에 의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행

○ 제작단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요제작비를 검토 후 승인

<제작업체 선정 및 실적확인>

○ 제작업체는 관련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로 선정

○ **충북낙협에서는 포장재 제작·구입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

○ 제작업체의 포장재 제작 납품실적 등 확인

<사업비 집행·정산 및 검정>

○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 준수

○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하고 추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정산 및 검정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청원군수

○ 보조금은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회수 조치

8. 행정사항

○ 청원군에서는 포장재가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 사업 세부추진계획 보고 : 2010. 1. 31일한 <서식 1>

○ 사업추진 실적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한 <서식 2>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서식 3>

서식 1

TMR사료 포장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생산자단체명(대표자) : (전화번호 :)
2. 사업장 소재지 :
3. 월 TMR사료 생산량 및 공급호수 : 톤/ 호
   - 월 소포장 생산량 및 공급호수 : 톤/ 호
4. 세부추진계획

분기별	품 명	수 량 (매)	규 격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자 담
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식 2

TMR사료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4분기)

1. 생산자단체명(대표자) : (전화번호 :)
2. 사업장 소재지 :
3. ○/4분기 TMR사료 생산량 및 공급호수 : 톤/ 호
   - ○/4분기 소포장용 TMR사료 생산량 및 공급호수 : 톤/ 호
4. 추진실적

계 획				○/4분기 실적				누 계			
사업량	계	도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자담	사업량	계	도비	자담

서식 3

TMR사료 포장재 지원사업 정산보고

1. 생산자단체명(대표자) : (전화번호 :)

2. 사업장 소재지 :

3. TMR사료 공급농가수 : 호

품 명	규격	단가	사업량 (매)		사업비 집행(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자 담	계	도 비	자 담	
계											

24.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1. 목 적

○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부존자원 활용 극대화 및 가축의 생산성 향상

○ 발효사료 제조·급여로 사료비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청원군수

○ 사업기간 : 2010. 1 ~ 6월

○ 사업내용 :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구입비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 사육농가중 사료배합기 구입 희망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농가의 사료배합기(발효사료 제조장비) 구입비

5. 지원비율

○ 도비 80%, 자담 20%

6.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5대	25,000	20,000	-	5,000	

7. 세부 추진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 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 전업규모 이상 소를 사육하는 농가, 영농법인 등 부존자원 활용이 가능한 농가
- 사업계획서 내용
  - 축종 및 사육두수, 장비명칭, 용량,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청원군수가 변경승인 하고 도에 보고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업대상자**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기계는 성능이 보장된 우수제품으로 구입하되 부품의 교환과 사후봉사가 용이한 제품을 선별 구입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 관례조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장비구입 및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8.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기계관리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청원군수가 책임관리 하도록 하고 가급적 조기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노동력과 사료비 절감 기여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2> : 2010. 2. 28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서식 1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신청서

1. 농 가 명 : **(전화번호 :)**

2. 주 소 : **(축종 및 사육두수 :)**

3. 설치예정지 :

4. 투자계획

장비명칭	수 량 (대)	처리용량 (톤)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자 담
계						

2010 월 일

신청인 (인)

청원군수 귀하

서식 2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대상자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수량(대)	처리용량(톤)	단가(천원)	투자계획(천원)		
주소	성명	축종 및 두수				계	도비	자담
계								

서식 3

축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청원군>

사업대상자		수량(대)	처리용량(톤)	단가(천원)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원)
					계획			실적			
주소	성명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계											

25. 발효사료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산	엄주광	행)3923 일)220-3923

1. 목 적

○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발효사료 장기보관 가능 및 기호성 증진

○ 저온저장고 활용 극대화를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신선도 유지

2.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청원군수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내용 : 발효사료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제작·구입비 지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축산농가 및 농산물 생산농가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 발효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축산농가
- 농산물 저온저장고
  · 과일류, 채소류, 서류 등 저온저장 효과가 큰 농산물 생산농가

○ 사업의무량 :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11개, 농산물 저온저장고 4개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저온저장고 제작·구입 비용

6. 지원비율

○ 도비 61%, 자담 39%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당 6,000천원 이내

8.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소)	규 격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자 담	
15	10㎥내외 /개	90,000	55,000	35,000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11개 농산물 저온저장고 4개

9. 사업추진 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신청서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청원군수 책임하에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 발효사료 생산·이용 농가
  - 농산물 저온저장고 : 과일류, 채소류, 서류 등 농산물 생산농가
- 사업계획서 내용
  -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 축종 및 사육두수, 사료혼합기 설치여부, 용량, 사업비 투자계획 등
  - 농산물 저온저장고 : 품목, 재배면적, 사업규모, 위치, 사업비 등
-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정산 등 효율적 추진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청원군수가 변경승인 하고 도에 보고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추진

○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 및 완료 확인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에 의거 사업비 지급은 축산부서에서 시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저온저장고 재질은 견고한 재질로 제작 또는 구입하며 냉각기를 설치하고 사후봉사가 용이한 업체 선정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 관례조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장비구입 및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0.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 저온저장고 관리는 일찍 설치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청원군수(축산·농정)가 책임관리하고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서식 2> : 2010. 2. 28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3>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

서식 1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신청서

1. 신청자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
2. 축종 및 사육두수 :
3. 설치예정지 :
4. 투자계획

시 설 명	수 량 (개소)	규 격 (㎡)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발효기 설치여부
				계	도 비	자 담	
계							

2010 월 일

신청인 (인)

청원군수 귀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신청서

1. 신청자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
2. 주 생산품목 및 재배면적 :
3. 설치예정지 :
4. 투자계획

시 설 명	수 량 (개소)	규 격 (㎡)	단 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자 담
계						

2010 월 일

신청인 (인)

청원군수 귀하

서식 2

발효사료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구 분	사업대상자		수 량 (대)	규 격 (㎥)	단 가 (천원)	투자계획(천원)		
	주 소	성 명				계	도 비	자 담
합 계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소 계							
농산물 저온저장고	소 계							

서식 3

발효사료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구 분	사업대상자		수량 (대)	규격 (㎥)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주 소	성 명				계	도비	자담	계	도비	자담	
	합계											
발효사료 저온저장고	소계											
농 산 물 저온저장고	소계											